

**소통하는 의정  
공감받는 의회**

제389회 임시회

'21. 3. 12.(금)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**1. 제출자 :** 충청북도지사

**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**

○ 제출일자 : 2021년 3월 3일

○ 회부일자 : 2021년 3월 5일

**3. 제안사유**

○ 법령상 근거 없는 “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신청 제한” 자구 삭제

**4. 주요내용**

○ 제24조(실적보고) 제4항

-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신청 제한 규정 삭제

**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김주희)**

**가. 제출배경**

○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유발생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.

- 현행 조례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- 본 조례안은 2017년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 관내 11개 시·군을 대상으로 실시된, 감사원 감사에서 불합리한 행정규제로 지적되어 개선 통보를 받았던, 현행 조례 제24조제4항의 ‘지방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신청 제한 규정’을 삭제하려는 것임.

## 나. 주요내용 검토

- 안 제24조에서,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함.
  -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,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, 세무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에 따라 조례 등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,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.
  -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5조제3항에 따르면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정하도록 되어 있음.

### □ 행정규제기본법

#### 제4조(규제 법정주의)

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,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(上位法令)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·총리령·부령 또는 조례·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 다만, 법령에서 전문적·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.

③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.

#### 제5조(규제의 원칙)

③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·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.

-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에서도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.
- 또한 현행 「지방재정법」에도 지방보조사업자의 불법·부당한 행위에 대해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교부 취소에 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을 뿐, 보조금 신청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.
- 따라서, 현행 조례 제24조에 규정된 ‘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로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신청 자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’은 현행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어 규제 법정주의에 어긋날 뿐 아니라, 다소 과한 제재로 규제의 원칙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,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대로 이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함.

현 행	개 정 안
<p>제24조(실적보고)</p> <p>④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<u>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</u>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.</p>	<p>제24조(실적보고)</p> <p>④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<u>대해서는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.</u></p>

#### 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법령상 근거 없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 문구를 삭제한 것으로 법적, 내용적으로 문제가 없음.

#### <참고> ※ 충청북도 도비 보조사업 현황

- ('18년도) 862개사업 / 2,171억원
- ('19년도) 914개사업 / 2,488억원
- ('20년도) 949개사업 / 3,008억원